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 신단체상해보험

2. 보험 목적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가 우연하고 급격하게 입은 신체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첫날의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의 오후 4시에 끝난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

5.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기타사항

1) 신단체상해보험은 5인 이상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우량계약단체에 대한 환급

단체계약으로 피보험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3차년도까지 매년 재계약을 조건으로 4차년도 계약갱신시 아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

환급액 : {3년간 수입보험료 - (3년간 지급보험금 + 3년간 예정사업비)} x A

단, ① A = Max (60% - 3년간 거수보험료 대비 평균지급 보험금 비율, 0)

② 수입보험료 : 납입한 보험료 - 해약환급금

③ 지급보험금 : 지급된 보험금 + 지급준비금 + 기타(조사비용, 변호사비용)
- 구상비용 (잔존물 + 대위)